

평창군 군세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9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지방세법의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이 개인분 및 사업소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군세 조례의 세목 명칭 및 관련 조항의 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존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개인분으로 변경(안 제3조)

나. 종전 주민세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(안 제2장 제목, 제4조,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2. 7. 28. ~ 2022. 8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(2022.7.17. 기획실-9709호)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, 부패유발효과 없음 (2022.7.17. 기획실-9709호)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영향없음(2022.07.18. 가족복지과-28729호)
- 5) 자치법규개인정보사전검토 : 개선대상없음(2022.07.26. 행정과-17389호)

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세율)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,000원으로 한다.

제2장제2절의 제목 “재산분”을 “사업소분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법 제81조제2항”을 “법 제81조제1항”으로, “재산분”을 “사업소분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재산분”을 “사업소분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법 제84조의3제2항”을 “법 제84조의3제1항”으로, “제1항에 따른”을 “제1항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3조(세액) 법 제78조의 세율에 따른 균등분의 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<u>1. 개인 균등분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군에 주소 가진 경우: 1만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나. 군에 사업소를 둔 경우: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세액</u></p> <p><u>2. 법인 균등분 : 법 제78조제1항제2호 표 안의 구분에 따른 세액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2절</u></p> <p>제4조(세율) <u>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u></p> <p>제5조(신고의무) <u>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, 지면, 용도, 층수, 건축물의 연면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.</u></p>	<p><u>제3조(세율)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,000원으로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2절 사업소분</u></p> <p>제4조(세율) ----- ----- <u>법 제81조제1항</u>----- ----- <u>사업소분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신고의무) <u>사업소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제6조(세율) 군수는 법 제84조의3
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
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
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제6조(세율) ----- 법 제84조의3제
1항-----
----- 제1항의
-----.

붙임: 지방세법 발췌문

제74조(정의)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개인분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2. “사업소분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3. “종업원분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
제75조(납세의무자)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(외국인의 경우에는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를 둔 개인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2. 「민법」에 따른 미성년자(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「주민등록법」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
3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4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

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(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
2.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(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·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

제76조(납세지)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.

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.

제78조(세율)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·면·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, 대상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79조(징수방법 등)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
-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.
-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80조(과세표준)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.

제81조(세율)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기본세율

가.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: 5만원

나.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

- 1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: 5만원
- 2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: 10만원
- 3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: 20만원
- 4) 그 밖의 법인: 5만원

2. 연면적에 대한 세율: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. 다만, 폐수 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
제82조(세액계산)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제83조(징수방법과 납기 등)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.

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.

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(이하 이 조에서 “납부서”라 한다)를 발송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.

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
제84조(신고의무)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.

제4절 종업원분

제84조의2(과세표준)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.

제84조의3(세율)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(제3조제5항제1호)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임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지원국 재무과장 권혁영
연락처	(033) 330 - 2270